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991호 2013. 11. 18.(월)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1203-1231호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공람·공고 ----- 1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1203-1237호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 5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231호

##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공람 · 공고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가좌진주1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18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좌진주1차아파트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가좌진주1차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	22,870.00	감 1,381.55	21,488.45	1단지 지분면적 조정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지 정 ( 변 경 ) 사 유
변 경	서구 가좌동 30-2번지	21,48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좌진주1차아파트 1단지 지분면적(21,488.45m<sup>2</sup>)에 맞도록 면적조정 후, 그에 따른 남측 구역계변경</li> <li>• 기정 정비예정구역(22,870m<sup>2</sup>)에서 감소하는 면적이 1,381.55m<sup>2</sup>(6.0%)로 10%미만이므로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함</li> </ul>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1,488.45	-	21,488.45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1,415.00	-	21,415.00	99.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73.00	-	73.00	0.3

4. 토지이용계획

명 칭	면 적(m <sup>2</sup> )	비 율(%)	비 고
합 계	21,488.45	100.00	
택 지	19,885.47	92.54	-
공동주택용지	18,947.03	88.17	-
근린생활시설1	865.44	4.03	-
근린생활시설2	73.00	0.34	공개공지
정비기반시설	1,602.98	7.46	-
도 로	1,472.98	6.85	-
주 차 장	130.00	0.61	-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계획

1)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80	15~17	국지 도로	435 (87)	대 2-35	대 2-32	일반 도로	인고 제884호 (1985.10.12)	구역축소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서구 가좌동 30-2번지	300	감) 170	130	인고 제1195호 (2011.8.16)	무상귀속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변경 ○ 면적 : 300m <sup>2</sup> →130m <sup>2</sup>	○ 정비구역 축소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지 면적 축소

6.건축물의 건축계획

■ 기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가좌진주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2,870	획지Ⅰ-1, 획지Ⅰ-2 (공동주택)	20,47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50% (260%) 이하	113m 이하	
			획지Ⅰ-3 (주차장)	300	노외주차장	50% 이하	250% 이하	-	
			허용용도	획지Ⅰ-1, 획지Ⅰ-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획지Ⅰ-3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획지Ⅰ-1, 획지Ⅰ-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Ⅰ-3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선	획지Ⅰ-1, 획지Ⅰ-2	○ 대로2-35호선변 : 6m 지정 ○ 중로2-80호선, 소로3-1호선변 : 3m 지정				
				획지Ⅰ-3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 85㎡ 이하 규모 주택을 60% 이상 건설(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 비율의 5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300%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30% 확보 -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경우에 한함)								
완화기준적용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8.70% + 지하주차장 계획 10% + 탑상형아파트 5% = 253.70% - 계획 용적률 : 250%(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40%미만	20~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등)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300%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가좌진주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1,488.45	획지Ⅰ-1, (공동주택)	18,947.0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 이하	250% (260%) 이하	113m 이하	
			획지Ⅰ-2	865.44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 이하	-	
			획지Ⅰ-3	73.00	근린생활시설	20%이하	80%이하	-	공개공지
			획지Ⅰ-4 (주차장)	130	노외주차장	-	-	-	
			허용용도	획지Ⅰ-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획지Ⅰ-2,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 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획지Ⅰ-4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획지Ⅰ-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Ⅰ-2,3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Ⅰ-4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선	획지Ⅰ-1	○대로2-35호선변 : 6m 지정 ○중로2-80호선, 소로3-1호선변 : 3m 지정				
				획지Ⅰ-2	○소로3-1호선변 : 3m 지정				
				획지Ⅰ-3	-				
				획지Ⅰ-4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 85㎡ 이하 규모 주택을 60% 이상 건설(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 비율의 5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300%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30% 확보 -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경우에 한함)						
완화기준적용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6.00% + 지하주차장 계획 10% + 탑상형아파트 5% = 251.00% - 계획 용적률 : 250%(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적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60%)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40%미만	20~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등)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300%						

7.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3.11.18 ~ 2013.12.17까지
8. 공 램 장 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74)
9. 관련도면 및 조서 : 개제생략(관련도면 및 조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237호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1. 13 .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

나.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규정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 및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하며, 변상금의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함

다.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점유 시점 판단 기준일을 조정함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재무과, 전화 : 560-41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구(이하“구”라 한다)”를 “서구”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를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천만원이하”를 “1억원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을 “각목의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를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송등”을 “소송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에 따른”으로, “예산편성전”을 “예산의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을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으로, “편성하기”를 “의결하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를 “영 제17조를 따르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7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재산 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당해재산”을 “해당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를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행정·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로,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을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시설보수는 구”를 “시설보수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4조 내지 제36조”를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3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대부기간중”을 “대부기간 중”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구시설등”을 “영구시설 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3항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

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제29조제1항 중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1000분”을 “1천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을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생산량중”을 “생산량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의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 대부분 받는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X	(토지·건물) 대부분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건물) 대부분 받는 해당 총의 총 공용면적		(토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건물)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총의 총 면적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등을”을 “대부료 등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등을”을 “대부료 등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을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을 “영 제34조에 따라 그 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6조 중 “보관함으로써”를 “보관하여”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 재산”을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4퍼센트”를 “2퍼센트”

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6퍼센트”를 “4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6퍼센트”를 “4퍼센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지식산업센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3퍼센트”를 “2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 제목“(매각대금의 감면)”을“(구성원가 매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구성원가는”을 “구성원가는 인건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과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과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단지내의”를 “단지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재산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따라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준

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31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예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

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제3절(제40조)을 삭제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사등”을 “청사 등”으로,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7조 중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을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1급 내지 2급”을 “관리비(1급·2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비(1급 내지 2급”을 “운영비(1급·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 내지 2급”을 “경비(1급·2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전기요금(1급 내지 2급”을 “전기요금(1급·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전화요금(1급 내지 2급”을 “전화요금(1급·2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요금(1급 내지 2급”을 “수도요금(1급·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을 “공동관리비(1급·2급”으

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을 “제50조에 따라 관사 중 다음 각 호의1”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제54조의 규정”을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10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작성등”을 “작성 등”으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7조 중 “정하다”를 “정한다”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3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를 심의한다.

1. (생략)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호-----.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행정재산-----  
-----  
-----

4. 일반재산-----

5. 그 밖의 -----  
-----  
-----

②-----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  
-----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

2. ----- 제57조제1항에 따른 -----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  
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  
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

나.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신 설>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  
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  
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 토지의 취득·처분

3. ----- 1억원이하-----  
-----

4. ----- 각 목의 행정재산-----  
-----

가. 30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  
당 -----  
-----  
---

나. ----- 1억원 -----  
---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으  
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  
에 의한 사업인가포함)시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  
산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따라 -----  
-----  
-----  
-----  
-----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  
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  
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  
사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과  
약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  
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  
-----  
-----  
-----.

제7조(실태조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  
-----  
-----  
-----.

②제1항에 따라 -----  
-----  
---- 각 호 -----  
-----.

- 1. ~ 6. (현행과 같음)
- 7. 그 밖에 -----

③-----  
----- 각 호 -----  
-----  
-----  
-----

기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과약)

④ (생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

-----.

- 1. ~ 4. (현행과 같음)
- 5. 소송 등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영 제7조에 따른 ----- 예산의결 전-----  
-----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 의결하기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법령에 따라 -----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생략)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  
-----  
-----  
-----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라 -----  
-----  
-----.

제15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  
-----  
-----.

제16조(무상사용기간) ----- 영 제17조를 따르되 -----  
-----  
-----  
-----.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7조(관리)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 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략)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  
-----  
-----.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  
----- 해  
당 재산-----  
-----.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  
-----  
-----.

1.·2.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 재산-----  
-----  
--.

1. ~ 7. (생략)

<신설>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

1. ~ 7.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행정재산-----  
-----  
-----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  
-----  
-- 제21조에 따라 -----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  
-----

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행정재산-----  
----- 영 제14조에 따라 -----  
-----  
-----

③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  
-----  
----- 관리  
수탁자-----  
-----  
----- . -----  
----- 관리수탁자-----  
----- 관리수탁자-----  
----- .

④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  
-----  
----- 관리수탁자-----  
-----  
----- .

⑤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  
-----  
----- 따라 입찰  
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  
-----  
-----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23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 시설보수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장 일반재산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대부기간 중-----.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 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이하

----- 법 제35조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영구시설 등  
-----  
-----  
-----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  
-----  
-----  
-----  
----- 제3항 -----  
-----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  
른 -----  
-----  
-----  
-----

“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  
-----  
-- 각 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  
-----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에 따른 -----  
-----  
-----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  
-----  
-----  
-----  
-----  
-----  
-----.

②---- 각 호-----  
-----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  
----.

1.·2.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  
----.

1.·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  
 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  
 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  
 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  
 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  
 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  
 다.

1. (생 략)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  
 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  
 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각 호-----  
 -----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  
 -----  
 -----
3. -----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생략)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5. (생략)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

터당 -----  
---. ----- 생산량  
중-----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규정에도 -----  
-----  
--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  
-----  
-----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  
----- 각 호-----  
-----.

1. ~ 5.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마. (생략)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 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

-----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  
-----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  
-----  
-----

2. ----- 각목-----  
----- 대부료 등을 -----.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평균 -----  
-----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  
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라. (생략)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  
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  
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  
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

-----  
-----  
-----

3. ----- 각 목-----  
----- 대부료 등을 -----  
-----.

가. (현행과 같음)

나. 1일 평균 -----  
-----

다.·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  
-----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  
조제4항에 따른 -----  
-----

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  
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  
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  
정하는 재산

- ②·③ (생략)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  
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  
의 50
-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밖에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른 -----  
-----  
-----.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 영 제34조에 따라  
그 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  
-----  
----- 100분  
의 70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  
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  
략)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  
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  
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  
할 수 있다.

<신설>

<삭제>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  
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  
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  
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한다.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  
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  
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  
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략)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1. ~ 9. (생략)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2. (생략)
-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1. ~ 9. (현행과 같음)
- 10. 그 밖에 -----

제36조(대부계약서) -----  
-----  
-----  
--- 보관하여 -----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  
-----  
--- 2퍼센트-----  
-----  
---- 각 호-----  
-.

- 1. · 2. (현행과 같음)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제2조에 따른 -----

-----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4. ----- 제2조제2호에 따른 -----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일반재산 ----- 4퍼센트-----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3. (생략)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

재산-----

-- 4퍼센트-----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

지식산업센터-----

-- 해당 -----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일반재산-----

----- 2퍼센

트-----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

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매각대금의 감면)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4호까지 및 제6호-----  
----- 일반재산-----  
-----  
----- 3퍼센트-----  
-----  
-----.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  
----- 각  
호----- 조성원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 (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과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 4. (생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

가는 인건비, -----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  
-----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  
----- 단지내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 재산

3.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따

- 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 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구와 당해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자

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절 신탁

<삭 제>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  
-----  
-----  
----- 각 호---

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  
·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  
정 규모로 설계

2. ~ 7. (생략)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  
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  
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  
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  
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  
다.

1.·2. (생략)

-----.

1. -----  
증·감 등 -----  
-----

2. ~ 7.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  
-----  
-----  
-----  
-----.

③청사 등 -----  
-----  
--- 제1항에 따라 -----  
-----  
--.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  
-----  
-- 건축조례에 따라 -----  
-----.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  
-----  
-----  
-----.

1.·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3. ----- 제52조에 따라 -----  
-----  
-----  
-----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4. 그 밖에 -----  
-----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

1. (생략)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관리비(1급 · 2급 -----
3. ----- 운영비(1급 · 2급 -----  
-----
4. -----  
-----  
----- 경비(1급 · 2급 -----  
-----
5. 전기요금(1급 · 2급 -----  
-----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  
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  
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  
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  
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  
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  
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6. 전화요금(1급·2급 -----  
-----

7. 수도요금(1급·2급 -----  
-----

8. ----- 공  
동관리비(1급·2급 -----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라 관사 중 다음 각 호의1---  
-----  
-----.

- 1. ~ 3. (현행과 같음)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  
----- 제55조  
에 따라 -----  
-----.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제54조---  
-----  
-----  
-----  
-----.

②제1항-----  
-----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 2. ~ 4. (생략)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 해  
당 -----  
-----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삭제>

- 2.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  
-----

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생 략)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생 략)

② ~ ④ (생 략)

-----  
-----  
-.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따른 -----  
----- 1천만  
원-----

1. ----- 각 목-----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작성 등-----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여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  
-----  
-----  
----- 해당 -----  
-----  
-----.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해당 -----  
-----  
-----  
-----  
-----  
-----  
-----  
-----  
-----.

제67조(시행규칙) -----  
-----  
-----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국 재무과	
연 락 처	(032) 560 - 416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237호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1. 13.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하고 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

- 행정재산, 보존재산 ⇒ 행정재산 / - 잡종재산 ⇒ 일반재산

나.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신청을 “구청장에게 신청”에서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권자인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으로 변경

다. 재산관리관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재무과, 전화 : 560-41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을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이 이를”을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가 이를”을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재산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

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계할”을 “인계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관리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등기등록 기타”를 “등기등록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구청장”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면 기타”를 “도면,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6항에 따른”으로,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면 기타”를 “도면,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회계간의 재산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관하고자 할”을 “이관코자 할 경우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으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있을때”를 “있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6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재산”을 “해당 재산”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일반재산대장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를 “하며, 보고는 공유재산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 중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의2 전단 중 “발송하는”을 “발송할”로 한다.

제34조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 및 제13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며, 제27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 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p>	<p>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u>----- ----- -----.</p>
<p>제2조(<u>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u>)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총무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p>	<p>제2조(<u>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u>) ①----- ----- ----- 한다)이 -----.</p>
<p>②구유재산은 다음 <u>각호</u>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p>	<p>②----- <u>각 호</u>----- ----- 한다)가 -----.</p>
<p>1.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가. ~ 다. (생략) 라. <u>기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과장</u></p>	<p>1. <u>행정재산</u>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그 밖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u></p>

2.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가. · 나. (생략)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은 재무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생략)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2. 일반재산 -----

-----  
-----  
-----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  
----- 일반재산-----

③----- 규정에도 -----  
-----  
-----  
-----  
-----  
-----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관리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 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할 수 있다.

⑤ (생략)

제4조(관리책임) ①·② (생략)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  
-----  
-----  
-----  
----- 그 밖에 -----  
-----.

③-----  
-----  
-----  
-----  
-----  
-----  
----- 인계하게 할 -----.

④----- 행정재산-  
----- 일반재  
산-----  
-----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등기등록 그 밖에 -----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에 따라 -----  
-----  
----- 각 호-----  
총괄재산관리관-----  
-----.

1. ~ 3. (현행과 같음)

4. 도면, 그 밖에 -----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른 -----  
-----  
----- 구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4. 도면, 그 밖에 -----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  
-----  
----- 이관코  
자 할 경우 또는 같은 회계 안  
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  
----- 상  
호 간-----



1. ~ 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  
--.

제13조(매각신청)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 행정재산-----  
-----  
-----  
-----  
-----  
-----  
-----.

② 행정재산-----  
-----  
-----.

제16조(교환) -----

재산의 교환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가격평정) ① (생략)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한다.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 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1조(등기수속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

-----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제18조(가격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그 밖의 -----  
-----.

제20조(인수인계) -----  
----- 해당 재산-----

----- 각 호-----  
-----.  
-----.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 해당 -----

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청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9. 도면
- 10. (생략)
- ② (생략)

제23조(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정하는 바에 따라 -----

②-----

-- 지체 없이 -----

----- 제1항에 따라 -----

제22조(매수신청) ①-----

- 1. ~ 8. (현행과 같음)
-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0.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신축등 신청) ①-----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절 대장 및 도면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보존재산대장

4. 잡종재산대장

② (생략)

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제1항에 따라 -----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  
-----  
--- 각 호-----  
-----  
-----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일반재산대장

② (현행과 같음)

③-----  
-----  
-----  
----- 그 밖-----

각호의 1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생략)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 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생략)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3. ----- 그 밖 -----  
- 그 밖 -----  
-----  
-----

4. (현행과 같음)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  
----- 그 밖 -----  
-----  
-----  
-----  
-----.

② -----  
----- 지체 없이 -----  
-----.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의2(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②----- 제1항에 따른 -----  
-----  
-----.

③-----  
-----  
----- 제46조에 따라 -----  
-----  
-----.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  
-----.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  
-----  
-----.

<삭 제>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② (생략)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삭 제>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

-----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

-----

----- 하며, 보고는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 제29

조제3항에 따른 -----

-----

---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

-----

<p><u>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 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u> 제 4 절 청사 및 관사관리</p>	<p><u>발송할</u> ----- ----- ----- ----- . --- -----</p>
<p>제34조(청사관리) 조례 <u>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u>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p>	<p>제34조(청사관리) ---- <u>제42조에 따른</u> ----- ----- .</p>
<p>제35조(관사관리) ① (생 략)</p>	<p>제35조(관사관리) ① (현행과 같 음)</p>
<p>②조례 <u>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u>은 별지 제23호서 식에 의한다.</p>	<p>②---- <u>제53조에 따른</u> ----- ----- ---</p>
<p>③제1항 <u>단서규정에 의하여</u> 관 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 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 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 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 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u>단서에 따라</u> ----- ----- ----- ----- ----- ----- -----</p>
<p>제 5 절 보 칙</p>	<p>-----</p>

[별지 제1호 서식]

## 은 닉 재 산 신 고 서

##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목)	면 적 (수량)	현소유자(점유)		비 고
				주 소	성 명	

## 2. 발견경위

##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	대장 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1.5.30)

**공유재산관리대장 (9-1)**

CODE NO :

( 토 지 )

회 계 명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속재산	작성 자	부속 서류	구분 색인	확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토지대장등본
		세분류					지적도등본
소재지 :	분						

지 적	취득시 :	m <sup>2</sup>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추가상황		
	현재 :	m <sup>2</sup>				년도	내용	금액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근지과세표준시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시가	시가 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월일	상대방
								취득원인		관 리 청 가 액	
								취득금액		비 고	
								전소유자			
								등기년월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 공유재산관리대장(9-2)

CODE NO :

( 건 물 )

회 계 명 :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소재지 :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배 치 도				

연 면 적	취득시 : m <sup>2</sup>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m <sup>2</sup>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 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적					

입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 공유재산관리대장(9-3)

CODE NO :

( 공 작 물 )

회 계 명 :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부 속 및 주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소재지 :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도	내 용	금 액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 공유재산관리대장(9-4)

CODE NO :

( 임 목 족 )

회 계 명 :

관리자 :	구  분	대분류		주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등기부등본  배 치 도  평 면 도	색  인		
소재지 :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종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분)주				
식 재 상 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유자		취득연일일		연월일					
수 량		취득원인		상대방					
임대년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가 액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 공유재산관리대장(9-5)

CODE NO :

( 선 박 )

회 계 명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비 고	확 인
		중분류		등 부등분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주요설비및속구 명 칭	개 수	용 도	깊 이	m	항해구역	
		선적항	넓 이	m	최대탑승 인원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신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 공유재산관리대장(9-6)

Code No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											
종 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m <sup>2</sup>		가 액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 록	대 조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기타											

### 공유재산관리대장(9-7)

Code No

(특허권·기타권리)

작성 자		확 인	
---------	--	--------	--

회 계 명 :            명    칭 :

재 산 관 리 관	종 목	등 록 번 호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속 서류	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 액	과 표 또는 평 가 액		평가자	기 록	대조	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소	성 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 고										

### 공유재산관리대장(9-8)

Code No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

작성 자		확 인	
---------	--	--------	--

회 계 명 :

주식 등 종 류						법       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	년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적 요 (증감 사유)	증		감		현 재		비고 (출자 재원등)	기 록	대 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공유재산관리대장(9-9)

Code No	(부동산신탁수익권)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신탁종류		수 탁 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지 제6호 서식]

###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이동 년월일	코드 번호	재산 종류	구 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 도	구 조	전기		증		감		증감 사유	등기	
				시군	읍면동	리가	지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분	일자

-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육,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재산종류	코드번호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조	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득년도	경과년수	토지등급	재평가액		차액 (증감)	비고
			시군	읍면동	리	가								지번	단가		

-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축,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 임 차 재 산 대 장

소 재 지		시 군		동 읍 면		가 리		번 지			
차 수 물 건	토 지	지 목			건 물	종 목			부 속 물	명 칭	수 량
		지 적	총 면 적	m <sup>2</sup>		구 조				전 체	m <sup>2</sup>
			차 수 면 적	m <sup>2</sup>		건 평				차 수	m <sup>2</sup>
소유자주소·성명											
차 수 목 적	계 약 년 월 일	임 차 기 간		임 차 요 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 급 년 월 일		적 요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지	년 월 일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도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우리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구의 결정에 의한다.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대부받는 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자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1항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수량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환사유	교환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위수량						
1건	처분 취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sup>2</sup>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m<sup>2</sup>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_\_\_\_\_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회장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 \_\_\_\_\_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7-6)

회계명 : \_\_\_\_\_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허가기간	대부및사용 허가용도	요율	추정대부 (사용)료	대부및 (사용허가) 방법	비고
	종별	소재지	지목· 구조	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_\_\_\_\_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허가기간	무상대부(사용허가) 근 거	비고
	종별	소재지	지목· 구조	수량				

[별지 제14호서식]

##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에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6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매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할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어구 해석)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 일체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 급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공과금) 매수자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







[별지 제17호서식]

##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사유재산(국유재산, ○○○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과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서구청장과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과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일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 나. 제 공과금의 지변

제5조 인천광역시서구청장과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6조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과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교환대상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별지 제18호 서식]

## 행정 재산 용도 폐지 승인 신청서

###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및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 무
	년월일	목 적	취득당시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0호 서식]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재지		시 구 동		가(로) 번지						
군 읍 면 리										
물건표시	토지	코드번호	건물	번호	기	명칭	부속사항			
		지목		종목		구조				
		면적		용도		면적		형식		
				전체 m <sup>2</sup>				전체 m <sup>2</sup>	수량	
대부사용 m <sup>2</sup>		대부·사용 m <sup>2</sup>								
적요										
허가번호	사용목적	계약(갱신)년월일	기간			대부사용액	대부·사용료징수		사용자	
							금액	징수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별지 제21호 서식]

### 토석 가격 평가 조서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 <sup>3</sup> )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m <sup>3</sup> 당 단가 (B)	금액 (A×B)	
								OO단체	OO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인)

-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 서식]

###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① 위 치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② 여 건	인 구 수	직원수	수 용 기 관		
	명	(정규 )명			
③ 대 지	지 목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④ 건 물	구 분	본 건물	부속건물		
	건 평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축계획

① 위 치	신축사유 :						
② 규모	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	㎡	구조	㎡	구조	
③ 총사업비	계	본 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 재원계획	계	교부세		도 비		시·군비	청사매각대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 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⑥ 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진 일정	추진 상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별지 제23호의2(1) 서식]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귀 하

(뒷면)

<p>※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p>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pre> graph LR     A[변상금 사전통지] -- 발송 --&gt; B[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B -- 제출 --&gt; C[변상금 부과고지]             </pre>	

[별지 제23호의2(2) 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인천광역시서구 공유 재산관리  
조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4호 서식]

##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2. 사용 신청관사의 표시

성명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재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신청기간 : 20 . . . . ~ 20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

신청인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①

[별지 제25호 서식]

##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①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